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윤덕·임오경·신영대

최민희 • 문진석 • 강유정

이원택 • 이연희 • 이건태

홍기원 · 김교흥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와 같 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 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또한,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(안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).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연소자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연소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 장운영자 및 공연자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5조(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) ① 제5조(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) ① 누구든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 람시킬 수 없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 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 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하여야 한 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33조(행정처분) ① -----제33조(행정처분) ①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수 ·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----. 다만, 제 <단서 신설> 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1. ~ 7. (생 략) ② (생 략)

 경우로서
 연소자의
 신분증
 위

 조·변조
 또는
 도용으로
 연소

 자의
 연령을
 알지
 못하였거나

 폭행
 또는
 협박으로
 연령을
 확

 인하지
 못한
 사정이
 인정되는

 자에게는
 문화체육관광부령으
 로
 정하는
 바에
 따라
 해당
 행

 정처분을
 면제할
 수
 있다.

 1.
 ~
 7. (현행과
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